

항공영어 시험제도

비전

항공종사자 역량 제고를 통한
인적요인 사고예방 강화

추진전략

-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
항공영어시험제도 확립
- 2 항공영어시험·평가의
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
- 3 항공영어시험·평가
운영환경 효율화



항공영어 시험제도

이렇게
개선됩니다!

1

국제기준에 부합하게
개선한다

2

시험·평가의 신뢰성·공정성을
제고한다

3

시험·평가 운영환경을
효율화 한다



국토교통부
Ministry of Land,
Infrastructure and Transport

항공영어 시험제도



1 2 3

이렇게
개선됩니다!



FLUENCY
COMPREHENSION
INTERACTION



국토교통부
Ministry of Land,
Infrastructure and Transport



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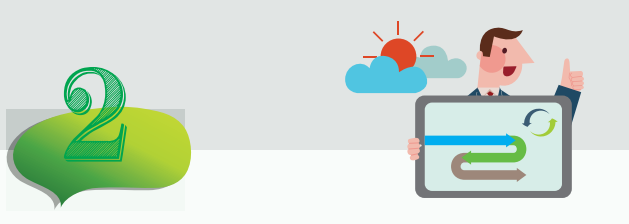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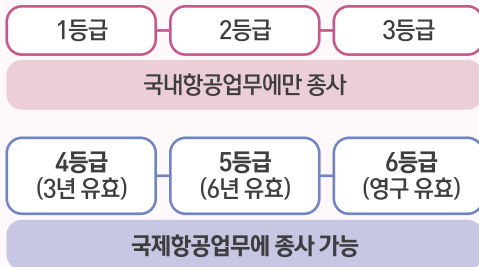
시험문제를 비공개로 전환

- 새로 개발하는 시험문제부터 비공개로 한다.
※ 단, 응시자의 시험 준비 지원을 위해 샘플 시험문제는 공개

6등급 전용평가 실시

- 원어민 수준인 6등급에 대해서는 응시자가 필요한 증빙서류*를 제출하면, 시행기관에서 1차 검토후 전문평가관(항공전문가 및 6등급 소지자)이 평가를 실시한다.
* 예시 : 영어권 학위, 출생지, 유년·청소년기 사용 언어 등

※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·관제사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 확보 필요



시험·평가의 신뢰성·공정성을 제고한다

시험문제 전면 개편

- 조종사·관제사간 교신 Role-Play 방식 위주로 항공영어와 일반영어 능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새로이 개발한다.* ('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)
* 듣기·말하기 능력을 동시 평가하는 통합형 문제로 개발
- 시험문제 전면 개편 전까지는 현행 시험체계를 유지한다. 다만, 듣기시험을 합격한 자가 듣기시험 합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말하기 시험만 실시한다. ('17.4월부터 시행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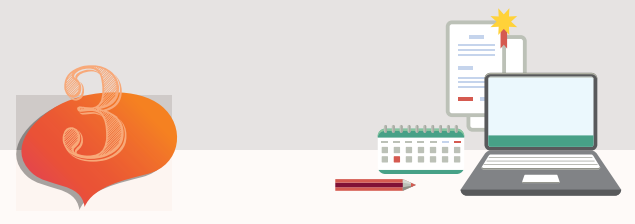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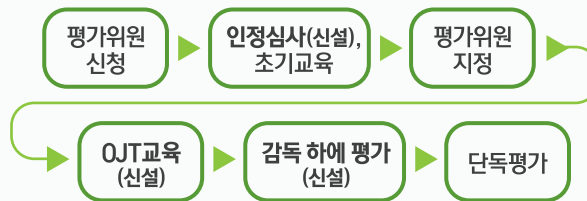
시험·평가기관 변경

- 시험·평가 시행기관을 현행 민간업체 [GTELP 코리아(주), IAES(주)]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한다. ('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)

평가위원 역량 강화

- 평가위원 선임시 인정심사를 실시하고, 평가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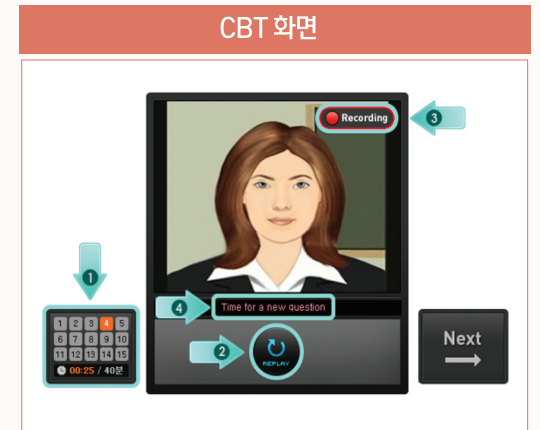
| 평가위원 선임·운영 절차



시험·평가 운영환경을 효율화 한다

시험·평가체계를 CBT(Computer Based Testing) 방식으로 전환

- 대면 인터뷰 방식을 CBT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력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효율적인 시험환경을 구축한다. ('18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)



응시로 현실화

- 시험·평가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여 응시료를 인상('17.4월부터 시행 예정)하고, CBT 환경 구축 시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응시료를 재조정 한다.